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829**

제출연월일: 2011. 7. .

제 출 자: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'10. 12. 27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'11. 9. 1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,
- 나.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상시 서민 경제 부담은 물론 타 물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인상 이전금액 으로 환원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월 주차 기본요금을 15,000원 →10,000원 인하 조정(안 제5조의2)
- 나.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 이하 사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10,000원
 - → 7,000원으로 인하조정(안 제5조의2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
- 나.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1조의2제2항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6. 16. ~ 7. 6.(의견제출 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"1만5천원"을 "1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1만원"을 "7천원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・	제5조의2(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・
운영) ① (생략)	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	2
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	
구획당 월 1만5천원 으로 하고, 운영시	1만원
간은 18:00 ~ 24:00까지로 한다. 다만,	
점포 앞 전용구획을 3시간 이하 사용자	
에게는 월 1만원 의 주차요금을 부과할	
 수 있다.	7천원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의 안심사보고서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1. 7. 7(목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7. 7(목)

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7. 13(수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'10. 12. 27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'11. 9. 1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,
-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상 시 서민 경제 부담은 물론 타 물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인상 이전금액 으로 확원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2(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설치·운영)월 주차 기본요금을 **15,000원** → **10,000원** 인하 조정
- O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 이하 사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10,000원
 - → 7,000원으로 인하조정

4. 근거법규

- O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
-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1조의2제2항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진부호)

○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

월 주차 기본요금과 점포 앞 전용구획 3시간 이하 사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

○ 2010년 12월 27일 본 조례가 개정되어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

있는 상황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,

○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주차요금 50%

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○ 수정사유

○ 2010년 12월 27일 조례가 개정되어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, 공공요금 등의 물가상승이 예정되어 있고 타 구·군과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1년 늦추어 2012 년 9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부칙 수정.

7. 수정내용

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